

안전관리자 증원·교체 규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연구

송 동 윤*·조 성 웅·이 승 환

*(주)대한안전경영연구원 / 기아자동차(주) /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Study on the necessity of improving safety manager reinforcement and replacement regulation system

Dong-Yun Song* · Sung Woong Cho** · Sung Hwan Lee

*Department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MYONGJI University

Abstract

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s, mass production becomes a smart production system.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do not decline, and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ization, due to the logic of economic agents that have an economical and effective employment environment, they are changed to non-regular worker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tipulates that the safety managers must be distinguished and the safety managers perform the task of conducting industrial accidents by balancing the dutie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regulation. Safety administrators providing advice on issues need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preventive measure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that may arise due to safety managers ' replacement due to accident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or accidents.

Keywords : Safety manager, Increase in manpower, Manpower replacement

1. 서론

현대사회가 발전 할수록 대량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어 가며, 기술의 변화로 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한 생산방식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산업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발전된 기술력을 요구하는 만큼, 한 회사에서 기술력이 높은 근로자는 감소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일용직의 고용 형태로 변화되면서 취급하는 근로자의 지식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한행동으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회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일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수의 안전관리자만 으로는 회사의 모든 위험을 예측 하고 예방관리 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및 임시직 등의 고용환경 변화 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여러 업무를 겸직으로 순수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형태에서 업무의 권한 및 만족도마저 저하되는 실정이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회사에서 중대한 사고가 다수 발생될 경우 안전관리자 증원 또는 교체를 고용노동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원 또

† Corresponding Author : Kyung-Sik Kang, Industrial and Engineering, Myongji University, Yongin 449-728, Korea

Received October 20, 2017; Revision Received November 11, 2017; Accepted December 11, 2017.

는 교체 명령제도 중 교체 명령은 열정과 노력으로 일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불안 및 안전관리자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자 교체 명령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안전관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2.1 안전관리제도의 이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Table 1>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 (safety manager, etc.)

-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과 규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종은 120억 이상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2 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문제점 및 예방책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구분하고 있으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Table 2>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 (work such as safety manager)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2.3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2014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우편설문 조사

응답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은 352개소로 약9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 중 약 21.6%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비정규직으로 선임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볼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기타업종의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비중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규모별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규직 선임사업장 비중이 훨씬 높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의 자체 선임하는 사업장은 50.5%이며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은 49.4%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3> Survey responses Selection status of safety managers by industry
 (unit: Count)

Contents		Safety manager	Full-time Safety Manager	Irregular safety manager	Not elected
industry	the manufacturing industry	130	128	2	6
	Construction industry	174	121	73	-
	Other industries and service industry	48	47	1	16
	total	352	296	76	22
Scale	50~99	136	102	42	13
	100~299	128	110	24	6
	300~499	38	34	8	2
	500~999	25	25	1	1
	1,000 more	25	25	1	-
	total	352	296	76	22

2.4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업종별·규모별로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수를 살펴보면, 우선, 설문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고 응답한 사업장 352개소에서 총 506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당 평균 1.4명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06명의 안전관리자 중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인원은 105명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Table 4> Employee of safety manager according to size of industry
 (unit: Number of people)

Contents		Safety manager	Full-time Safety Manager	Irregular safety manager	Not elected
industry	the manufacturing industry	195	193	2	
	Construction industry	256	154	102	
	Other industries and service industry	56	54	1	
Scale	50~99	165	112	53	
	100~299	170	136	34	
	300~499	57	45	12	
	500~999	45	42	3	
	1,000 more	69	66	3	
	total	506	401	105	

2.5 안전관리자의 전담 및 겸직여부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규제 완화조치를 담고 있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근거에 따라 기업의 의무고용을 완화 시키는 조항이 있으며 이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위법으로써 안전관리자 고용의무를 완화하고 업무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Table 6> Article 29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Regarding Corporate Activities Regulation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p> <p>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p> <p>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p> <p>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p> <p>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p> <p>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p> <p>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p> <p>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p> <p>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p>

<p>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p> <p>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p> <p>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p> <p>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p> <p>9.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 안전관리자</p> <p>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 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종조사</p>
--

<Table 6>, <Table 7>은 업종별·규모별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지,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안전관리자 368명 중 약 30%가 다른 업무와 안전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는 103명 중 약 15%만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련 업무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규직의 경우 안전관련 업무 비중이 평균 52.1% 수준으로 조사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약 73.3%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보다는 전담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업무를 겸임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임시 안전관련 업무의 비중도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Table 6> Whether the safety manager is working hourly in the business sector of the survey response scale

Contents		Regular employee safety manager		
		Full-time Safety Manager	Additional Safety Management	Additional Safety Management proportion (%)
industry	the manufacturing industry	124	51	52.5
	Construction industry	119	22	56.4
	Other industries and service industry	18	34	48.7
Scale	50~99	70	37	51.5
	100~299	74	53	51.5
	300~499	31	8	51.3
	500~999	40	4	51.3
	1,000 more	46	5	47.5
	total	261	107	52.1

<표 6 계속>

Contents		Irregular employee safety manager		
		Full-time Safety Manager	Additional Safety Management	Additional Safety Management proportion (%)
industry	the manufacturing industry	2	0	-
	Construction industry	86	13	74.6
	Other industries and service industry	0	2	65.0
Scale	50~99	43	8	73.8
	100~299	28	6	76.7
	300~499	11	1	50.0
	500~999	5	0	-
	1,000 more	1	0	-
	total	88	15	73.3

3.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및 형법 제도

3.1 벌칙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제재로 벌칙규정에서는 형벌의 대상인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및 형법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또는 제24조(보건조치)” 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법 제66조의2에 근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Table 7>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3 (Safety Measures)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Table 8>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4 (Health Measures)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계·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

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Table 9> Investigation and measures of the place where the death occurred

year	Number of occurrences	Judicial measures (count)					
		sub Total	redemption	not redemption			
2005	996	955	2	953			
2006	949	665	3	662			
2007	959	732	4	728			
year	Administrative measures (count)						
	Total	Stop work	stop using	Safety diagnosis	Safety Manager Increase Order	Penalties imposed	Designation instructions
2005	1,093	242	58	73	2	207	511
2006	578	271	57	-	-	138	112
2007	758	364	41	-	-	160	193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한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근로자에 속하는 안전관리자도 업무상 과실 등의 사유로 형사 처벌한 사례가 <Table 9>과 같이 있다.

<Table 10> Results of disposition of offenders related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year	prosecution(count)			
	total	sub Total	not redemp tion	phrase summary indictment
2004	7,687	6,606	15	89
2005	6,537	5,050	5	50
2006	4,496	3,368	3	116
2007	4,490	3,487	3	93
year	Not prosecute(count)			
	sub Total	suspension of indictm ent	No consult ation	Not the right of arraignment
2004	1,056	447	558	51
2005	1,476	672	764	40
2006	1,119	507	567	45
2007	1,000	396	570	34

<Table 11> Criminal punishment cases of workers

가. 사실관계의 요지
 지**건설 주식회사는 비계구조물해체와 철근콘크리트 전 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두***개발에 비계구조물해체 작 업 전체를 하도급 하였다. A는 지**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고 B 는 두***개발의 비계팀장으로서 사고현장의 안전관리자 였다. B는 사고현장의 비계해체작업을 근로자에게 지시 하면서 해체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3m 간격으 로 설치되어 있던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해체작업을 하 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체작업을 하던 도중 근로자가 추 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 판단의 요지
 대법원은 지**건설(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과 두

***개발(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 반죄에 대해서는 무죄, A,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서 모두 유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안전관리자의 형법상 처벌에 관한 유권해석(산안 68331-511, 1993. 11. 16.)을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 조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행위자로 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법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 하여 가능하다면 산업 안전관리자를 법 제15조에 의한 스텝(staff)으로서의 임무수행여부에 대한 책임만 물도 록 하여 주시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사업주는 물론, 관리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4. 안전관리자의 증원 및 교체

4.1 증원 및 교체 명령의 의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 항,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 으로 하거나 교체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4.2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의 요건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안전관리자의 업 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 관)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할 것을 명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가.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 나.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
- 다.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라. 화학적인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4.3 증원명령의 절차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결론

전체 업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정규직 안전관리자의 고용형태가 많은 것으로 확인 되며, 상대적으로 정규직 안전관리 겸직업무자가 비정규직 안전관리 겸직자에 비하여 안전업무 비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와 더불어 일반 업무까지 일을 하며 겸직자 중 안전업무 비중은 약 50%이상으로 확인 된다.

정규직의 경우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겸직을 하는 사업장이 많고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안전관리 전담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는 한 회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이지만 겸직업무로 인하여 업무가 분산되면서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 되지만 안전관리자와 같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산업재해의 형태는 여러 가지의 불안요소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사고가 발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안전관리자 증원 또는 교체 명령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의 감독관이 안전관업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의 의견 수렴 후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증원·교체 명령을 하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Table 9>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증원 명령한 사례는 있으나 교체 명령을 실행한 경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만약 안전관리자 교체 명령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보았을 때 해당 회사는 추가 고용에 따라 고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재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는 보직 변경 또는 안전관리 소홀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 및 대체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형법에서 과실치사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직업을 기피했던 과거의 사례와 같이 안전관리자 교체 명령 사례가 발생 된다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의욕은 낮아질 것이며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안전관리 전문인은 사회에서 줄어 들것이라 생각 된다.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업체에 위탁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증원 교체 명령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나 회사에서 고용하여 선임된 전담 및 겸직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체 명령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규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체 명령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와 같이 관리자의 질병등의 사유로 국한 하고, 업종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경우의 사업장은 외부 안전전문 인력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명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 한다.

즉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안전지도사, 안전진단기관 및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통하여 회사의 안전관리 상태 및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예방활동 계획을 수립할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안전지도 명령(예: 안전점검 1주일, 또는 2주일 등) 하는 형태로 개정되어 해당 회사의 전담 안전관리자의 기존위치를 존중하며 안전관리 전문성을 더욱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6. References

- [1] Kim Jong-Man "Study on safety and safety consciousness of unstable employment" 2015
- [2] Jeon Yong Il "Industrial comparison disasters, etc. under health and safety manager employment" 2014
- [3] Kim Jong-in "A Study on Understanding of Industrial Safety Policy Direction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Safety Managers" 2012
- [4] Cho Dhok-hak "Study on Improvement of Safety and Health Responsibility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2011
- [5] Jeon Hyung Bae "Study on rationalization plan of criminal punishment system of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2011
- [6] Cho Dhok-hak “Cases of penalties and penalties f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2009
- [7] Noh Sang-hun “Improving penalty system for violation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s” 2008
- [8] Kim Byung-Seok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Management Method of Safety Management for Small and Medium-Sized Workplaces” 2005
- [9] Lim Young-Hoon “Improving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irregular workers” 2001
- [10] Jeon Jae Kyung “Study on securing effectiveness of industrial safety law enforcement” 2000
- [11] Kwon Young Kuk “Survey and comparative study of industrial safety managers” 2000

저자 소개

송 동 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경영 공학과 박사과정 중, 현재 (주)대한안전경영연구원 부장으로 재직 중.
관심분야 : 산업안전재해분석, 안전관리자의 직무, 산업재해조사

조 성 용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석사 과정 중, 현재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 안전환경팀 팀장으로 재직 중.
관심분야 :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적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승 환



명지대학교 산업경영 학과 박사과정 중, 현재 (주)대한안전경영연구원 대표이사로 재직 중.
관심분야 : 산업안전교육, 시스템안전, 산업안전관리, 노무관리